

지자체가 교통시스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
모형을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유도하기
위하여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함

2012년 6월 29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1. 주요내용

- 가.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던 관행을 벗어나
도입·운영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·검토
- 이미 도입·활용되고 있는 BRT, 경전철 뿐 아니라 R&D로
개발 중인 신교통수단을 포함
 - 도입노선의 영향권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·검토
- 나.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
신교통수단을 선택
- 연간운영비와 예상수입이 같아지는 운영비 충족 영향권인구를 도출
- 다. 지자체는 총사업비충족을 위한 건설비지원규모와 교통수단별
국고보조규모를 고려하여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의 신교통
수단을 선택

- 도입 노선의 예상수입이 전체 총사업비 충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중 지자체의 부담규모를 판단
- 라.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
- 최대수송용량과 침두시 이용객수가 같아지는 침두시충족영향권인구를 도출하고 도입 노선의 영향권인구 비교
- 마. 재무적 타당성 및 침두시 수요처리가 가능한 경우 적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교통수단 선택 권장
- 침두시를 제외한 운영시간의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적정수송능력의 범위 안에서 처리가능한지를 검토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
- (1)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, 별첨